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정조서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의뢰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최고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품업자 등의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채권의 집행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분쟁조정협의회가 납품업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납품업자 등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 윤 식

●법률 제1413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발행주식총수”를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중 “주식소유현황”을 “주식소유현황,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순환출자 현황”을 “순환출자 현황, 제1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여부(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직전 사업 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를 “청산 중에 있거나”로 한다.

제17조제4항제3호 중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같은 조 제3항제2호·제3호”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 이후에 새롭게 제19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제28조제3항 단서 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8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을 삭제한다.

제3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48조의6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제48조의7제4항제2호 중 “분쟁조정신청서를”을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로, “60일”을 “60일(분쟁 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로 한다.

제48조의8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5조의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7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第30條(再販賣價格維持契約의 修正), 第31條(是正措置) 또는 第34條(是正措置)의 規定에 의한”을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또는 제31조(시정조치)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1항, 제2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판상 화해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분쟁 조정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7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제2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부당한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부당한 국제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일부가 지주회사 전환 후에도 다수 계열회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회사와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국내계열 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집단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산 중에 있는 모든 회사의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징금 부과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자 함.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사업자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을 받은 이후에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과징금이 다른 위반행위 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형평을 맞추도록 함.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국제계약의 체결을 제한하고 있으나, 1998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조항에 근거한 시정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현행법의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조항은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분쟁조정에 있어 분쟁당사자가 기간 연장에 동의하였음에도 60일 도래로 인해 조정을 종료하는 것이 비효율적임을 고려하여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 분쟁조정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도록 하였음.

한편,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원에서 패소한 경우 적법하게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가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함에 있어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에 속하는 금융·보험사의 국내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의결권 행사 제한에 있어 적용하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여 이를 명확히 함(제11조제3호).
-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회사의 현황과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추가함(제11조의4제1항).
- 다.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모든 회사의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함(제14조제5항).

- 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제17조제4항제3호).
- 마.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새로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담합 등을 자진신고하더라도 감면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도록 함(제22조의2제2항 신설).
- 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제28조제3항 단서).
- 사.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함(제8장 삭제).
- 아. 분쟁조정 신청 시 시효의 중단을 규정함(제4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자.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접수된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분쟁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 조정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7).
- 차.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제48조의8).
- 카.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제55조의7 단서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 윤 식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14138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가목 중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는 제외한다.
6.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2조제6호 중 “제5호”를 “제7호”로 한다.